

부산지방법원 2023. 8. 16 선고 2022가단32625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휘열

피 고 1. 주식회사 B

2. C 주식회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해

담당변호사 문주호, 박상욱

변 론 종 결 2023. 6. 14.

판 결 선 고 2023. 8. 1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원고에 대하여 65,630,730원의 채무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2. 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6. 26. 체결된 매매계약

을 취소한다.

나.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피고 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 2020. 7. 23. 접수 제21441호로써 2020. 6. 26. 매매를 원인으로 마친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채권을 갖고 있던 중 피고 B이 채무금 282,665,051원 중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금 65,630,730원을 임의산정하여 나머지 217,034,321원만 변제하였으므로 원고는 여전히 피고 B에게 65,630,730원의 채권을 갖는 채권자이다.

그런데 무자력인 피고 B이 피고 C에게 청구취지 2.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관할 세무서에 피고 B이 납부한 65,630,730원의 반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기 위하여 피고 B을 상대로 65,630,730원의 채권의 존재확인을 구하고, 사해행위인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며 원상회복으로서 마쳐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성

가. 피고 B에 대한 채무 존재확인 청구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존재확인을 구하는 채권은 이미 확정판결 및 소송이용확정결정을 받은 채권인 사실을 알 수 있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런데 이 사건 확인청구는 원고가 이미 확정된 승소판결을 받은 채권에 해당한다.

더욱이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115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세무서에 피고가 원천징수한 위 돈 상당액의 반환여부 판단을 받기위하여 이 사건 소 중 확인 청구에 이르렀다는 것이나 이 사건 확인의 소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제3자인 세무서에 대하여 법률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

이 사건 소 중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피고 B이 무자력인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이 사건에서 제출하는 증거들(이 법원의 금정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D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 B이 이 사건 매매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거나 이 사건 매매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로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을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E 주식회사가 위 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지급할 신탁재산 잔여액을 집행공탁하여 원고를 비롯한 피고 B의 채권자들이 배당을 받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B이 무자력이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정민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 금정구 [도로명주소] 부산 금정구

철근콘크리트구조(철근)콘크리트지붕 20층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부산 금정구 대 846㎡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374.86㎡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841분의 55.4005 팔.

